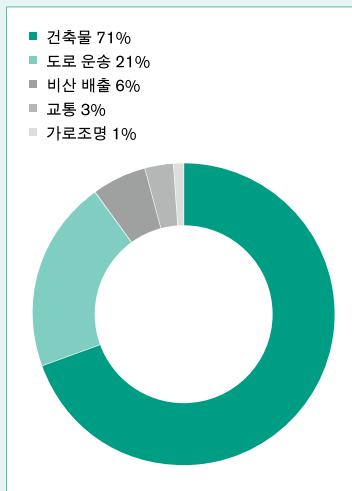


뉴욕, 기후변화 대응자원 동원법(Climat e Mobilization Act) 제정

<https://council.nyc.gov/data/green/>

<https://council.nyc.gov/press/2019/04/18/1730/>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209-19/action-global-warming-nyc-s-green-new-deal#/0>



뉴욕시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 뉴욕시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nyc.gov/data/green>(검색일: 2019.6.13.)

뉴욕시는 지난 4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자원 동원법(Climat e Mobilization Act, 이하 기후동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2005년 기준)시킨다는 내용으로,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은 위 법안을 포함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힘쓰고자 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며, 뉴욕시 건물부(Department of Building: DOB) 내에 에너지 및 배출 성능 사무소를 설치해 법안 시행 및 정책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건물의 정확한 에너지 등급 부여를 위해 에너지 효율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특히 도시 전역에 약 5만 개에 달하는 2만 5,000ft²(약 700평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에 대해 낮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건물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축 건물은 엄격한 성능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면 유리를 사용하는 외관 설계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지속가능한 지붕구역(Sustainable Roofing Zone)’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성을 촉진시킨다. 개축 공사를 진행하는 기존 건물을 포함해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지붕(Green Roof) 혹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소형 풍력 터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종이가방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풍력 발전, 유기물 관리 등 재생에너지 활용, 가스연소식 발전소 교체 등 통합적인 조치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더블라지오 시장은 기후동원법 및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